

조세심판례를 통한 세무전략 사례 분석*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미실현손실 활용

심준용** · 조미옥*** · 김기영**** · 박경진*****

〈요 약〉

본 연구는 2009년 코오롱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이전하였다가 재매입함으로써 누적되어 있던 미실현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한 사례를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009년 12월 3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코오롱은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설립하였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승계한 순자산은 약 7,325억원이었다. 승계된 총자산은 약 2조 5,225억원으로 그 중에는 약 86억원 상당의 네오뷰코오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2010년 1월 13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으로부터 약 90억원을 수령하고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재매각하였다. 회계적으로는 처분이익 약 4억원을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누적되어 있던 네오뷰코오롱의 지분법손실 1,384억원을 손금으로 산입함에 따라 2010년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16년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실질을 볼 때 자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고한 지분법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2016년에 약 743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청구 결과,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이는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법인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실현 평가손실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전략을 구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와 관련 조세심판례, 관련 회사의 공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세무전략의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인적분할 및 지분법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지분법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분석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회계학 교

*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세무학회 연구소모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jyshim@mju.ac.kr, 주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meeokcho@mju.ac.kr,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ykim@mju.ac.kr, 공동저자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hichikj@mju.ac.kr, 공동저자

육 목적으로도 유용한 실무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세무회계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주제어〉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자전거래, 세무조사 추정세액

I. 서 론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내용과 그에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례를 통하여 (주)코오롱(이하, 코오롱)의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이하, 코오롱인더스트리) 인적분할 과정에서 네오뷰코오롱(주)(이하,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승계하였다가 매매입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분석한다.¹⁾ 2009년 10월 15일 코오롱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12월 31일을 분할기준일로 하여 순자산 약 7,325억원을 승계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설립되었다. 이전된 총자산 2조 5,225억원 가운데에는 네오뷰코오롱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약 86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9년 11월 3일 공시한 코오롱의 증권신고서(분할)에 첨부된 예비투자설명서에서는 신설회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인수한 네오뷰코오롱의 주식을 분할 완료 후 적정한 시기에 코오롱이 공정가치로 매매입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10년 1월 13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코오롱으로부터 약 90억원을 수령하고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매매각하였다.

이 거래를 보면 회계적으로는 처분이익이 약 4억원 발생하여 손익계산서에 기록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다른 이슈가 숨겨져 있었다. 네오뷰코오롱은 과거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었고,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잠식을 면하고 있었다.²⁾ 당시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코오롱의 지분율은 99%를 상회하고 있어, 네오뷰코오롱의 유상증자의 원천은 코오롱이라 할 수 있다. 코오롱은 2009년까지 네오뷰코오롱 주식 취득에 약 1,47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장부금액은 약 86억원에 지나지 않아 약 1,384억원의 지분법손실이 누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지분법손실은 자산에 대한 임의평가감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년 세전순이익을 보고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분법손실을 통한 법인세 절감효과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 1) 네오뷰코오롱은 사명을 코오롱아우토(주)로 변경하였으나, 본 사례논문에서는 사례 발생 당시 사명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 2) 구체적으로 네오뷰코오롱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여섯 번의 유상증자를 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매각하고 단기간내에 재취득하는 경우 자전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³⁾ 따라서 코오롱이 해당 지분법손실을 세무상으로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해당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분할설립하면서 네오뷰코오롱의 주식을 이전했다가 재취득함으로써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해당 지분법손실을 승계하여 세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16년 세무조사에서 해당 거래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실질을 볼 때 자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고한 지분법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2016년에 약 743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러한 추징세액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18년 4월 2일 해당 거래에서 세무상 처분손실을 인식한 주체와 주식을 보유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사례를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네오뷰코오롱의 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해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지분법 회계처리를 검토하고 지분법에 대한 세무처리를 분석함으로써 회계학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무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자산의 임의평가와 관련하여 누적된 미실현손익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거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무전략의 사례를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와 관련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하여 외부로 잘 공개되지 않는 세무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세무회계분야 연구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구배경으로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내역과 조세심판례를 살펴본다. 이후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분석하고, 제Ⅴ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에 따르면 ‘경쟁 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지주회사 전환 및 인적분할 관련 선행연구 검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는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정의한다. 이러한 지주회사는 스스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자회사를 관리 및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와 스스로 사업은 하지 않고 자회사를 관리 및 지배하는 것만을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로 구분한다. 또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라 하고, 그 외의 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라 한다.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이 금지되었다.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국가경제가 위환위기에 처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1998년 말 상법을 개정하여 회사분할제도를 도입하고, 1999년 초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제한된 요건 하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허용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6). 기업집단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예,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의 분리·매각, 주력 부문의 핵심역량 집중 및 외자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한 것이다(조명연·안정호 2006 ; 최종학 2014).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고 나면 계열회사간 출자관계가 수직 체계화되고 감시(monitaring)가 용이해짐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이 개선되는 것이 지주회사제도의 순기능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2003년 19개에서 2021년 말 기준으로 168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⁴⁾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존 회사를 물적분할(split-off) 또는 인적분할(spin-off)을 통해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기존 회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로 만들고, 기존 회사가 신규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방식이다. 후자는 기존회사를 분할하여 신규 자회사를 만들고 신규 자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각자의 지분율만큼 갖게 되는 방식이다. 즉 인적분할의 경우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기존회사와 신규회사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하게 되므로 두 기업의 지분 구조가 동일해지는데, 분할 이후 한 회사가 지주회사 요건에 충족하도록 다른 회사의 주식을 획득함으로써 지주회사가 된다.

기업의 소유구조(corporate ownership)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La Porta et al. 1999), 한국기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어 사적이익 추구나 부실 계열사 지원과 같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매년 국내 지주회사의 수를 발표한다.

(박경서 2017). 공정거래위원회(2018)는 인적분할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현물출자 등은 지배주주의 지배력 증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다.⁵⁾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면 반대로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하게 되므로 그 둘 간의 이해상충문제의 발생이 가능한 것이다.

지주회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 지주회사 설립·전환 방식, 그리고 지주회사 설립·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다루었다. 우선 지주회사제도 도입의 찬반과 관련한 선행연구가 수행되었다. 국내 기업들의 순환출자와 관련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지현미 외 2008)과 수직체제화된 출자관계로 인하여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동규 2000)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이호영 외(2015)는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소유-지배 괴리도가 점차 증가하였음을 보여 오히려 지주회사의 전환으로 재벌기업집단 총수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를 살펴본 회계학 분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신호영·박화운(2008)과 지현미 외(2008)는 지주회사 전환시 이익조정이 감소함을 발견하였으나, 김성환 외(2009)는 지주회사 전환시 (손)자회사의 주식 저평가를 위한 이익조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최수미·임묘경(2009)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통제기업을 비교하여 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가 좋음을 보였으나 이익조정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문영(2019)은 지주회사 전환이후 재벌기업집단 내 상장사의 수익성이 개선됨을 보였으며, 이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커질수록 강화됨을 보였다.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허용하고 장려함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업분할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나 자본구조, 기업가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예, Berger and Ofek 1995 ; Ahn and Denis 2004 ; Dittmar 2004 ; 박경진 외 2005 ; 유진수 2015 ; 박진우·이민교 2019 ; 정무권 2018). 유진수(2014)는 인적분할을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지배주주의 지주회사 및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강화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영학의 여러 관점에서 사례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이석영·유상열(2004)은 LG화학 사례를 통하여 회사분할을 이용한 지주회사 설립과정과 분할 후 주식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고, 노태우·조동성(2014)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LG상사 패션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LG패션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박진우(2020)는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사례를 통해 지주회사의 전환과정과 지배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박진우(2022)는 재무적 측면에서 LG화학의 물적분할과 SK텔레콤의 인적분할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지주회사 설립·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세

5) 이러한 현상을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 일컫는다.

관련 쟁점사항을 살펴보았다.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제도⁶⁾는 기업의 분할이 ‘적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그리고 분할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다양한 세목의 세금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분할을 진행할 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바 해당 분할이 ‘적격’요건을 갖춘 분할인지 혹은 문제가 되는 쟁점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다(예, 김병욱·박훈 2019 ; 이은충 2019 ; 조주희·최기호 2020 ; 황남석 2020). 또한, 이은충(2019)은 OCI판결을 근거로 기업분할에 관한 적격분할요건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자사주의 마법과 관련하여서는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해야한다는 금지론과 그 반대인 허용론에 대한 논의가 경제적 실질과 조세특례의 적용 측면에서 이루어졌다(예, 황남석 2015 ; 이상훈 2020).

하지만 기업의 분할과정에서 자기주식 이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주식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된다. 한편, 보유하고 있던 자산(예, 주식, 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거래를 ‘자전거래(wash sale)’라 한다. 이러한 자전거래는 형식적 거래로 경제적 실질은 매각 이전과 동일하나, 미실현손익이 실현됨과 동시에 장부금액이 변경되는 효과가 있다.⁷⁾ 다만, 이러한 자전거래로 인한 주식의 처분손익의 경우 법인세법상 인식이 제한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1). 맹수석(2016)은 법학관점에서 자전거래의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자전거래와 관련된 회계학 및 세무학 관점의 선행연구는 희소하다.

2.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 관련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s),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등을 이용해 왔다(예, 심해린 외 2022). 더불어 세무조사 추정세액 또한 실질적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증거이므로 이를 조세회피 변수로 활용한 선행연구 역시 수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4년 내지 5년 주기로 전산시스템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조사와 탈세정보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시조사를 통해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 추정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추정

6)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서 적격분할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분리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아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법령에 따른 사후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분할이 된다.

7) 이는 해당 물건의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시세를 조종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경우 공정거래를 저해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에 근거 금지된다.

세액의 규모는 2021년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1건당 약 9.8억원(=총 부과세액 3.99조/조사법인 수 4,073개)으로⁸⁾, 상장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1건당 추정세액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유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관련 통계자료는 국세청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 이상(유가증권시장 상장 대기업은 2.5% 이상, 코스닥시장 상장 대기업은 3% 이상)인 벌금, 과태료, 추징금,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당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이하, DART)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⁹⁾¹⁰⁾ 따라서, 세무조사 추정세액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시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술한 공시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을 제외하면 기업이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이용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관련된 연구 역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무조사로 인한 추정세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작업으로 상장기업의 공시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세무조사 추정세액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최소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은 주로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기업의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정운오·전병욱(2010)은 사적으로 수집한 158개의 세무조사 표본을 이용해 기업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착수일, 종결일과 결과통지일 전후 기간의 주가 수익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의 착수(종결)에 대해서는 부정(공정)적 주가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세무조사 추정세액의 공시일 전후 주가반응을 살펴본 결과 공시일 직후 거래일에 주가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현상 보고하였다. 기현희·김연용(2008)은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 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가가 하락(상승)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심준용 외(2015)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세무조사추정세액을 공시한 202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세무조사추정세액에 대한 공시이후 발생한 주가하락현상이 +5거래일까지 유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 존재여부나(심준용 외 2015),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및 기업지배구조 특성(정재연·심준용 2019)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제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이광숙·기은선(2018)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그 사후계획을 밝힌 30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수행하여 기업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추정세액이 크면 조세불복 제기가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조세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얻게 되는 경

8)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은 매년 국내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발표한다.

9)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1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10)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관련한 공시서류의 명칭은 ‘벌금 등의 부과’이다.

제적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¹¹⁾ 국내 상장기업이 공시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추정세액을 공시하였다면 그 추정세액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세무조사에 따른 추정세액을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정정공시 제외),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관련된 공시는 296건이고, 추정세액은 평균 약 16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6%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세무조사 추정세액을 공시한 기업들의 조세불복 의사결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유추된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깊게 다루어지지 않은 인적분할로 인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주식거래가 자전거래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를 살펴보고 조세심판례 및 공시정보에 근거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정세액과 관련한 공시를 통해 세무조사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추정세액이 부과된 코오롱인더스트리 사례를 선별하고, 조세심판례를 통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무상 쟁점이 된 내용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판결정을 내린 후에는 이를 정리하여 조세심판례로 공개하고 있다.¹²⁾ 전술한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사항들이 발생하지만, 회계처리나 세무상 처리의 경우 기업내부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검토에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 추정세액 공시와 조세심판례와 더불어 지주회사 전환과정이 개시된 시점부터 조세소송의 결과가 공개된 시점까지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제시한다.

III. 연구배경

1. 코오롱인더스트리 세무조사추정세액 관련 공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10월 18일에 2016년 말을 납부기한으로 약 743억원의 세무조사 추정세액을 부과받은 사항을 공시하였다. 이는 2015년 말 기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연결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의 3.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¹³⁾ 관련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7년 3월 31

11) 그 외에도 이광숙·기은선(2018)은 세수실적 목표에 미달한 해에 세무조사 추징을 당했거나, 정기 세무조사에 비하여 특별 세무조사에 의하여 추징을 당한 경우에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규모가 크거나 수익성이 높은 경우 조세소송 대응능력이나 소송비용 감당능력이 있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세무조사 결과가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불복 제기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12) 조세심판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https://www.tt.go.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13)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직전 보고기간 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벌금·과태료·추징금·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DART에 ‘벌금 등의 부과’의 공시의무가 있다.

일에 공시한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는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2014년에 약 167억원(주민세 포함)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받은 데 이어, 2016년에 다시 주민세를 포함하여 약 812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항이 나타나 있다.¹⁴⁾¹⁵⁾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향후 적극적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을 함께 공시하였으며, 이후 2018년 4월 3일에 ‘벌금 등의 부과’의 정정공시를 하였다. 해당 정정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8년 4월 2일 최초 부과되었던 743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 중 약 617억원에 대하여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는 2016년에 세무조사추징세액이 부과되었다가 불복절차 심판 결과로 617억원의 부과처분 취소 결정문을 수령하였음을 공시하였다.¹⁶⁾ 이를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기납부했던 추징세액을 환급받았을 것이며, 실제 2018년 감사보고서 상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보면 약 2,2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했음에도 약 783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세무조사추징세액과 관련한 공시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세무조사추징세액 관련 공시 내역

공시일	보고서명	내 용
2016년 10월 18일	벌금 등의 부과	- 약 743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
2017년 3월 31일	사업보고서(2016.12)	-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서울시 방국세청 법인세통합조사 - 주민세 포함 약 812억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 2016년에 관련 세액을 납부 후 불복 진행 중
2018년 4월 3일	[정정]벌금 등의 부과	- 최초 부과 추징세액 중 약 617억원 부과취소
2019년 6월 26일	사업보고서(2018.12)	- 2016년 세무조사에 대하여 약 808억원 추징세액 납부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한 결과 2018년 4월 2일 약 617억원 부과처분 취소 결정문 수령

14) DART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016년 사업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을 참고하였다.

15) 2016년 10월 18일자 ‘벌금 등의 부과’공시 상 법인세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추징세액은 743억원이나, 여기에 지방세인 주민세 약 69억원이 추가되어 총 812억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

16) DART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018년 사업보고서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을 참고하였다.

17) 본 연구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공시정보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어, 부과취소 금액이 환급세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코오롱인더스트리 조세심판례

2018년 4월 2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수령한 부과처분 취소결정문과 관련한 조세심판례는 청구번호 조심 2017중0314로,¹⁸⁾ 해당 심판례의 주요 쟁점사항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식 매각거래가 사실상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허위공시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이다. 즉, 과세관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분할 당시 승계한 네오뷰코오롱 주식을 코오롱에 재매각한 거래를 자전거래로 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정한행위가 있었기에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거래는 자전거래가 아니며,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세무조사추징세액의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당 심판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개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분할신설 당시 코오롱이 보유하고 있던 네오뷰코오롱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지분율 99.76%)를 약 86억원의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였다가 2010년 1월 13일에 총 매매대금 약 90억원으로 코오롱에 재매각하였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네오뷰코오롱 주식의 재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하, 쟁점주식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2016년 4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4일까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10-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2016년 9월 26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0사업연도 중 손금에 산입한 쟁점주식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6년 11월 10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16년 12월 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장

주식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처분손익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법인세법상 처분손익의 인식이 제한되는 자전거래는¹⁹⁾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사실상 동시에 매각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18) 해당 조세심판례(조심2017중0314, 2018.03.29.)의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에서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tt.go.kr/mUser/dem/demView.do?semok=20&dem_no=163087&menuNm=demList&rdView=subject

19) 주석 3에서 언급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5...1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에 의거한다.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은 매각 이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손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재매입가격으로 인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네오뷰코오롱 주식의 재매각은 처분함과 동시(또는 단시간 내)에 처분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주식 매각거래에서 처분손실을 인식한 주체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이며, 법인분할 및 주식 매각 전·후에 네오뷰코오롱 주식의 소유자는 코오롱으로서 처분손실 인식주체와 거래 전·후 투자주식의 소유자가 달라 자전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 의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처분손실은 분할로 승계할 당시 인식하여야 할 주식 처분손실이 분할특례규정에 따라 과세이연된 것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처분손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나 이는 과세이연한 처분손실을 다시 재매각을 통해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

적격분할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세제상 혜택으로 이러한 세제상 혜택이 오히려 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평가손실을 정당한 손실로 처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거래의 내용은 그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비록 외관은 분할이라는 형식을 빌려 소유와 처분손실 인식 주체가 달라졌으나, 그 실질 내용은 소유자인 코오롱의 처분손실을 인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코오롱은 분할 전부터 네오뷰코오롱 주식을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승계한 후 재매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코오롱의 자회사가 될 경우 네오뷰코오롱은 손자회사가 되어 공정거래법상 네오뷰코오롱 주식의 보유제한이 있을 것으로 충분한 예견이 되어 있었던 바, 공정거래법상 제한 때문에 해당 주식을 승계한 후 재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오히려 코오롱이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을 공개매수로 취득하여 자회사로 전환할 예정이었음에도 법인 분할시 네오뷰코오롱 주식을 청구법인에 승계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순된 행태에 해당한다.

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2016년 11월 10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위와 같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와 조세심판례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공시사항을 분석하고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거래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V. 사례분석

1.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회계처리 분석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분할 설립 당시 코오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부채를 장부금액으로 인식하였다.²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코오롱인더스트리 설립시 승계 자산부채 내역 (단위 : 천원)

내역	금액
A. 분할이전한 자산의 장부가액	2,522,473,183
B. 분할이전한 부채의 장부가액	1,789,946,092
C. 분할이전한 순자산의 장부가액(A-B)	732,527,091
D. 분할로 승계한 자본내역	199,522,443
E.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97,465,250
F. 주식발행초과금(C-D-E)	435,539,398

* DART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010년 감사보고서 주석 ‘31. 분할’을 참고함.

관련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설립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설립 당시 회계처리 추정		(단위 : 천원)	
차변		대변 ²¹⁾	
자산	2,522,473,183	부채	1,789,946,092
		자본금	97,465,250
		주식발행초과금	435,539,398
		기타자본잉여금	2,104,50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7,417,938
합계	2,522,473,183	합계	2,522,473,183

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동일지배 하의 인적분할시 분할신설기업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기준은 없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15에서는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고 하여 동일지배하의 분할 거래에서 장부금액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21) 코오롱인더스트리(주) 2010년 감사보고서 상 자본변동표의 기초금액을 통하여 기타자본잉여금과 기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승계한 2조 5,225억원의 자산 안에는 약 5,566억원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10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내역 (단위 : 천원)

회 사 명	기 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기타증감 ^(주2)	기 말
코오롱글로벌	119,406,306	—	22,355,387	278,562	142,040,255
코오롱플라스틱	30,478,456	—	9,617,369	(1,123,533)	38,972,292
코오롱인베스트먼트	2,411,345	—	118,221	2,478	2,532,044
네오뷰코오롱	8,589,490	(8,589,490)	—	—	—
코리아이플랫폼	2,129,918	—	338,015	(38,632)	2,429,301
하나캐피탈	39,362,801	—	5,042,101	228,993	44,633,894
Kolon Nanjing Co., Ltd.	42,594,917	38,031,000	8,212,094	542,401	89,380,411
Kolon GP Chemical	10,264,182	—	741,461	47,582	11,053,225
KF&T ^(주1)	500,000	—	—	—	500,000
코오롱패션머티리얼	79,218,045	—	10,057,887	(717,642)	88,558,290
코오롱에코너지 ^(주1)	600,000	—	—	—	600,000
Skc Kolon PI	99,843,086	—	12,419,255	(25,000,001)	87,262,341
코오롱에버레이 ^(주1)	100,000	—	—	—	100,000
China Kolon Water Management	303,781	(303,781)	—	—	—
Kolon USA INC.	—	—	1,014,886	(79,867)	935,020
Kolon EU GmbH ^(주1)	443,495	801,135	—	—	1,244,630
캠브리지코오롱	110,699,048	—	2,673,692	(259,092)	113,113,648
가룡(상해)무역유한공사	5,240,377	—	711,058	50,646	6,002,081
스위트밀	789,004	—	(496,890)	226,954	519,068
FnC Kolon America ^(주1)	1,129,210	—	—	—	1,129,210
부은시(북경)무역유한공사 ^(주1)	2,478,500	—	—	—	2,478,500
(주)케이브이지제1호	—	7,300,000	—	—	7,300,000
합 계	556,581,961	37,238,864	72,804,535	(25,841,151)	640,784,210

(주1) 피투자회사의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 미만이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당사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 않음.

(주2) 기타증감은 균등유상감자에 따른 대가수령액 25,000,001천원, 지분법자본변동 1,140,919천원 및 지분법자본잉여금 (-)229,769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 DART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010년 감사보고서 주석 '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참고함.

포괄손익누계액 금액을 확인하였다.

이 중 본 사례분석의 쟁점이 되는 네오뷰코오롱의 주식을 보면 약 86억원 상당의 금액으로 승계했다가 2010년 중에 처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10년 1분기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중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금액이 약 90억원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매각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매각 회계처리 추정 (단위 : 천원)			
차변		대변	
현금 등	8,956,48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589,490
		처분이익	366,990
합계	8,956,480	합계	8,956,480

회계처리 상으로는 처분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조세심판례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네오뷰코오롱 주식을 코오롱에 채매각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처분이익이 발생했으나, 세무상으로는 처분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2.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분석

네오뷰코오롱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요약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당시 네오뷰코오롱은 지속적인 손실로 인하여 결손 상태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듭 유상증자를 실시해 왔다. 또한 2009년에는 9월 15일 유상증자 이후 35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결손을 보전하였다. 그러나 순자산액은 약 9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표 4> 네오뷰코오롱의 2007년~2009년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말 현재	2008년 말 현재	2007년 말 현재
자산	35,407,461	35,425,979	46,598,554
부채	26,377,916	26,968,678	25,388,206
자본	9,029,545	8,457,301	21,210,348
자본금	4,233,745	130,681,715	121,181,715
자본잉여금	3,274,277	1,646,937	1,693,474
결손금	0	(123,871,351)	(101,664,840)

* DART에서 네오뷰코오롱(주)의 2007년~2009년 감사보고서를 참고함.

관련하여 코오롱은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는 다음 <표 5>에서 제시한 코오롱의 분기별 네오뷰코오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코오롱의 네오뷰코오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내역

(단위 : 천원)

공시보고서	주식 수(주)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평가손실 누계
2008년 말	26,065,343	99.73%	129,468,252	7,869,271	(121,598,981)
2009년 1분기	27,665,343	99.74%	137,468,252	12,866,218	(124,602,034)
2009년 반기	27,665,343	99.74%	137,468,252	8,353,673	(129,114,579)
2009년 3분기	25,565,343	99.76%	146,968,252	13,277,695	(133,690,557)
2009년 말	—	—	—	—	—
2010년 1분기	3,093,810	99.93%	33,014,047 ²²⁾	29,092,616	(3,921,431)

* DART에서 코오롱(주)의 2008년 및 2009년 감사보고서와 2009년 분·반기 및 2010년 1분기 검토보고서를 참고함.

<표 5>를 보면 코오롱은 네오뷰코오롱 지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나, 평가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오뷰코오롱의 2009년 감사보고서 상 자본변동표를 보면 2009년 3월 2일과 9월 15일에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 이후 무상감자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코오롱의 지분율은 99.76%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 분할 당시 승계한 네오뷰코오롱 주식의 장부금액이 약 86억원이었으므로 2009년 말에 해당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누계액은 약 1,384억원(146,968,252천 - 8,589,490천 = 138,378,762천)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회계상으로는 지분법손실로 계상되나, 세무상으로는 손급불산입 처리되므로 세무상 네오뷰코오롱 주식의 취득금액은 위 <표 5>의 취득원가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회계 및 세무처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코오롱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지분법 회계처리 추정				(단위 : 천원)
차변		대변		
투자주식 취득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46,968,252	현금 등		146,968,252
지분법 평가				
지분법손실	138,378,76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38,378,762

22) 2010년 1분기 중(2010년 1월 29일) 네오뷰코오롱은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네오뷰코오롱 2010년 자본변동표), 코오롱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코오롱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세무조정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투자주식 평가손실	138,378,762	유보
코오롱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회계 및 세무상 장부가액			(단위 : 천원)
회계상 장부가액	세무상 장부가액	차이	
8,589,490	146,968,252	138,378,762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코오롱의 입장에서는 네오뷰코오롱에 대하여 매년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상으로는 임의평가감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코오롱은 매년 세전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손실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이 누적되고 있었다. 이는 코오롱의 2009년 감사보고서 상 주석 '21.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6>과 <표 7>은 각각 2010년 1분기말을 기준으로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이연법인세 자산 내역 중 지분법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한다.

<표 6>에서 코오롱의 지분법손익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이 분할을 통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승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코오롱의 2010년 1분기말 지분법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분할로 인한 감소액	기말
지분법(배당금)	17,958,922	2,721,522	7,556,521	(2,997,535)	10,126,388
지분법(당기)	153,382,726	9,796,550	—	(172,234,316)	(9,055,040)
지분법(잉여금)	68,408,463	—	12,275,662	(49,359,917)	6,772,884
지분법자본조정	87,022,195	—	65,995,710	(21,026,485)	—
합계	326,772,306	12,518,072	85,827,893	(245,618,253)	7,844,232

* DART에서 코오롱(주)의 2010년 1분기 검토보고서 주석 '21.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를 참고함.

〈표 7〉 코오롱인더스트리의 2010년 1분기말 지분법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지분법(배당금)	2,997,535	—	—	2,997,535
지분법(당기)	172,234,315	—	139,623,729	32,610,586
지분법(잉여금)	49,359,918	—	9,642,399	39,717,519
지분법자본조정	21,026,485	—	3,163,062	17,863,423
합계	245,618,253	0	152,429,190	93,189,063

* DART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2010년 1분기 검토보고서 주석 '22.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를 참고함.

<표 7>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0년 중 네오뷰코오롱 처분을 통해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실현하여 지분법손실 누계액이 세무상 처분손실로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처분과 관련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추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처분 회계처리 추정 (단위 : 천원)			
차변		대변	
현금 등	8,956,48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8,589,490
		처분이익	366,990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처분 세무처리 추정 (단위 : 천원)			
차변		대변	
현금 등	8,956,48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46,968,252
처분손실(평가손실 실현)	138,011,772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네오뷰코오롱 주식 세무조정 추정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금액	소득처분
익금불산입	처분이익	366,990	△유보
손금산입	평가손실 추인	138,011,772	△유보
합계		138,378,762	

3. 사례분석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코오롱은 네오뷰코오롱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지속된 네오뷰코오롱의 손실로 인하여 지분법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오롱은 매년 순이익 발생으로 법인세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분법손실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2009년 말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도록 거래구조를 계획하고 인적분할을 통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자산을 승계함에 따라 관련한 세무조정 사항도 모두 코오롱인더스트리로 승계되었다.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네오뷰코오롱 주식을 코오롱에 재매각하면서 관련 평가손실을 실현시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약 2,288억원의 세전순이익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은 178억원(유효세율 : 7.76%)만을 보고하였으며, 법인세 부담액은 159억원(현금유효세율 : 6.95%)에 불과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2016년 세무조사에서 해당 주식 거래가 자전거래임을 들어 지분법평가손실의 손금 산입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코오롱이 인적분할을 계획할 당시부터 사업적 목적으로 네오뷰코오롱 지분의 승계 후 재매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²³⁾ 손금을 인식하는 법인과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자전거래가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취소하였다.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거래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법인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누적된 평가손실을 실현하여 법인세를 절감한 세무전략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본 사례분석은 회계적으로 지분법 회계처리와 그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회계학 교육에서도 유용한 실무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코오롱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이전하였다가 재매입함으로써 누적되어 있던 미실현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23) 코오롱이 2009년 11월 3일 공시한 분할 관련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예비투자설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오뷰코오롱의 주식을 공정가치로 매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⑨ 계열사 주식 이전관련 사항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네오뷰코오롱 주식회사 발행 주식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로 이전되나, 동 주식은 분할이 완료된 후 적정한 시기에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로부터 공정한 평가 가액으로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내역을 활용하여 관련 조세심판례를 찾아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네오뷰코오롱의 공시사항을 분석하여 관련 회계처리과 세무처리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분할기준일인 2009년말까지 누적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1,384억원의 네오뷰코오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손실을 적격분할을 통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승계했다가 2010년 초 다시 매입함으로써 코오롱은 네오뷰코오롱에 대한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네오뷰코오롱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10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유효법인세율은 7.76%, 현금 유효법인세율은 6.95%로 나타났고, 이는 당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세전순이익 규모에 적용되는 한계세율 24.2%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즉,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이 거래를 코오롱의 주식 자전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2016년 약 743억원의 세무조사추징세액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청구 결과 해당 거래는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주체와 주식을 보유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와 관련 조세심판례, 관련 회사의 공시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세무전략의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인적분할 및 지분법 회계처리를 제시하고, 지분법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분석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회계학 교육적으로도 유용한 실무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세무회계 연구와 관련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2016. “2016년판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8.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보도자료. 2018.11.13.
- 기현희 · 김연용. 2008. “벌과금 등의 추가납부세액 공시로 인한 주가반응”. 국제회계연구 제24권 : 35-51.
- 김병욱 · 박훈. 2019.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결함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문제”. 서울법학 제27권 제2호 : 1-40.
- 김성환 · 김태동 · 김상기. 2009.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 회계와 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 299-323.
- 노태우 · 조동성. 2014. “무역에서 패션으로, 사업전문화를 위한 LG 패션의 기업분할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제18권 제1호 : 111-143.
- 맹수석. 2016.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기업법연구 제30권 제1호 : 141-166.
- 박경서. 2017. “기업지배구조 연구의 고찰과 향후 국내관련 연구의 방향”. 경영학연구 제46권 제3호 : 625-662.
- 박경진 · 신현한 · 장진호. 2005. “기업분할과 경영성과”. 전략경영연구 제8권 제2호 : 81-104.
- 박진우 · 이민교. 2019. “중견기업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한국증권학회지 제48권 제1호 : 1-27.
- 박진우. 2020.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제24권 제4호 : 69-93.
- 박진우. 2022. “LG화학의 물적분할과 SK텔레콤의 인적분할”. *Korea Business Review* 제26권 제3호 : 71-93.
- 신호영 · 박화윤. 2008.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이익조정과 지배구조개선”. 국제회계연구 제23권 : 77-98.
- 심준용 · 유승원 · 이만우. 2015.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주가반응에 재무분석가가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2권 제1호 : 103-144.
- 심해린 · 최기호 · 유지선. 2022. “조세회피 측정치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유효법인세율 및 재량적 발생액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7권 제2호 : 101-141.
- 유진수. 2014.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연구”. 산업조직연구 제22권 제2호 : 73-95.
- 유진수. 2015.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이 주가에 미친 효과 분석”. 전문경영인연구 제18권 제3호 : 65-80.
- 이광숙 · 기은선. 2018.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조세불복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 회계연구 제7권 제3호 : 189-220.

- 이동규. 2000. “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방안”. 공정거래 제61권 : 8-12.
- 이문영. 2019. “지주회사체제와 경영성과 : 형식적 변화인가, 실질적 변화인가?”. 회계학연구 제44권 제6호 : 232-264.
- 이상훈. 2020. “인적 분할과 자사주마법”. 상사법연구 제39권 제2호 : 367-412.
- 이석영 · 유상열. 2004. “회사분할을 이용한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분리 : LG 화학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회계연구 제4권 제1호 : 23-53.
- 이은충. 2019. “기업분할세제의 주요 논점과 적용”. 조세법연구 제25권 제3호 : 267-316.
- 이호영 · 강지혜 · 권예슬. 2015. “LG 그룹 지주회사 전환과정과 소유구조 변화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24권 제4호 : 223-248.
- 정무권. 2018. “인적분할과 기업가치”. 재무관리연구 제35권 제3호 : 217-243.
- 정운오 · 전병욱. 2010. “세무조사와 추가반응”. 세무학연구 제27권 제3호 : 179-203.
- 정재연 · 심준용. 2019. “세무조사추징세액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에 기업특성이 영향을 미치는가?”.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 9-39.
- 조명연 · 안정호. 2006. “분할법인의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제12권 제2호 : 396-430.
- 조주희 · 최기호. 2020. “적격 물적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한 시가 승계와 장부가액 승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2호 : 35-59.
- 지현미 · 박홍조 · 이영한. 2008. “지주회사 전환이 이익조정과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6권 제3호 : 89-111.
- 최수미 · 임묘경. 2009.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익의 질”.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 207-239.
- 최종학. 2014. “‘인적분할+주식교환’ 첫 실험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교과서가 되다”. 동아비즈니스리뷰 제153호 : 98-104.
- 황남석. 2015.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조세법연구 제21권 제1호 : 117-138.
- 황남석. 2020.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세무와 회계연구 제9권 제4호 : 109-140.
- Ahn, S., and D. J. Denis. 2004. Internal capital markets and investment policy : evidence from corporate spinoff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1(3) : 489-516.
- Berger, P. G., and E. Ofek. 1995. Diversification's effect on firm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7(1) : 39-65.
- Dittmar, A. 2004. Capital structure in corporate spin-offs. *The Journal of Business* 77(1) : 9-43.
- La Porta, R.,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1999. Corporate ownership around the world. *The Journal of Finance* 54(2) : 471-517.

A Case Study of Tax Strategy : Unrealized Losses of Equity Method Investment Stocks

Junyong Shim^{*} · Meeok Cho^{**} · Ki Young Kim^{***} · Kyung Jin Park^{****}

〈Abstract〉

We analyze how Kolon transferred and then repurchased stocks using the equity method of Neoview Kolon, which reflected accumulated unrealized valuation losses as tax deductions in the spin-off process of Kolon Industries in 2009.

On December 31, 2009, as the base date for the spin-off, Kolon spun off its manufacturing division to establish Kolon Industries, which took over with net assets of approximately KRW 732.5 billion. The total assets inherited were approximately KRW 2,522.5 billion, including KRW 8.6 billion worth of Neoview Kolon equity method investment stocks. Afterward, on January 13, 2010, Kolon Industries received approximately KRW 9 billion from Kolon and resold its equity method investments. Kolon Industries was expected to have recorded a profit on disposal of about KRW 400 million in its book but to have deducted the cumulative equity method loss of KRW 138.4 billion of Neoview Kolon for the tax reconciliation. As a result, the firm could benefit from a corporate tax reduction in 2010.

In this regard, the tax authority, during the 2016 tax investigation, determined that the transaction had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that it was a wash sale transaction in terms of economic substance. Thus, the tax authority judged that the inclusion of the equity method valuation loss reported by Kolon Industries in deductible expenses was unreasonable. As a result, a tax investigation penalty of approximately KRW 743 billion was imposed in 2016. However, Kolon Industries filed an appeal to the Tax Tribunal, and the imposition was canceled. This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Kolon and Kolon Industries employing effective tax strategies to utilize unscheduled valuation losses within the corporate tax law.

By examining tax penalty disclosures, precedents in the Tax Tribunal, and related disclosures of financial statements (e.g., audit reports, quarterly and semiannual review reports) from various angles, this cas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corporate tax strategy. Particularly, this study, backed up with specific figures, presents both accounting and tax treatments of the spin-off and the equity method, providing a practical example useful for accounting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our methodology to analyze corporate tax strategies, this study calls for researchers' attention to the tax accounting literature.

〈Key words〉 Conversion to holding company, Spin-off, Wash sale, Tax penal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jyshim@mju.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meeokcho@mju.ac.kr,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kykim@mju.ac.kr, Co-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Myongji University, chichikj@mju.ac.kr, Co-author